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심사보고서

2023. 6. 27.

운영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2023년 5월 4일
- 나. 발 의 자: 김지연 의원 외 3명
- 다. 회부일자: 2023년 5월 11일
- 라. 상정일자: 제245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1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2023. 6. 19.)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김지연 의원)

-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기준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2조)
  - 제도개선 조치 태만에 대한 문책기준 신설(안 제3조)
  - 징계 기준 및 징계에 관한 개별 기준(안 별표1, 안 별표2)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옥연)

#### ○ 본 개정규칙안은

-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발의한 안건임.

####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인사위원회가 징계 등을 의결 시 대상자의 비위 유형, 과실의 경중, 뉘우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의 ‘징계기준’ 및 ‘징계부가금 부과기준’ 등에 따라 의결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함.
- **안 제3조(제도개선 조치 태만에 대한 문책기준)**는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별표5)에 따른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적용 시 제도개선 조치를 태만히 하여 제도미비로 인한 비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책결정사항으로 보아 감독자부터 문책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
- **안 [별표1](징계기준)**에서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별표1)의 ‘징계기준’에 근거하여 11가지의 비위의 유형에 대해 이를 항목별로 세분화하고 비위의 정도에 차등을 두어 징계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 **안 [별표2](징계에 관한 개별기준)**에서는 현 조례의 [별표] ‘징계에 관한 개별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지방공무원 징계규칙」(별표1)~(별표3)에 근거하여 ‘음주운전’,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청렴의무’와 관련한 징계 기준을 신설하고, 현 조례에서는 “견책 이상”의 징계에 해당하는 ‘음주추태로 인한 품위손상(경범죄 등)’에 대해 “감봉 이상”의 징계로 변경하여 징계의 수위를 높임.

#### ○ 검토 결과

- 개정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및 제4조에서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및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 징계규칙」(별표5)에서 “정책결정 사항” 중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과실의 유무에 상관없이 최고감독자(결재권자에 해당함)에 대해 1순위로 문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본 개정규칙안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근거하여 관련 규정을 신설 또는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징계 대상 행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징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김지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5
----------	-----

발의연월일: 2023. 5. .  
발의자: 김지연, 유승용, 우경란  
이순우 의원(4인)

##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의 전부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규칙의 목적(안 제1조)
- 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기준에 관한 사항 규정 정비(안 제2조)
- 다. 제도개선 조치 태만에 대한 문책기준 신설(안 제3조)
- 라. 경고조치에 관항 사항 규정(안 제4조)
- 마. 징계에 관한 개별 기준(별표)

## 3. 개정안: “별첨”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 : 생략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전 부개정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의 대상인 혐의자의 비위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또는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별표 2의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4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음주운전, 청렴의무 위반 등에 대한 징계기준의 상한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2 및 별표 3을 따른다.

**제3조(제도개선 조치 태만에 대한 문책기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5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적용 시, 제도개선 조치를 태만히 하여 제도미비로 인한 비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정책결정사항으로 보아 감독자부터 문책을 할 수 있다.

**제4조(경고조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장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공무원에게 징계 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조치하고,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여야 한다.

년 월 일 : 불문(경고)
○○ 인사위원회 의결사항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징계기준(제2조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의 비위 1)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
다. 부작위2),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라. 직무관련 주요 부패행위3)의 신고·고발의무 불이행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마. 소극행정4)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제10조, 제11조의2 및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당 등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사.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5)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아. 부정청탁6)	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자.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차. 성 관련 비위나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에 대응하지 않거나 은폐한 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카. 기 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무단결근	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다. 기 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4. 친절·공정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5. 비밀 엄수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유출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	감봉-견책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및 관리 소홀 등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마. 그 밖의 보안관계 법령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6. 청렴의무 위반	[별표 2]과 같음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업무상 위력 등7),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나. 그 밖의 성폭력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다. 성희롱8)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라. 성매매9)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마. 음주운전	[별표 2]과 같음			
바.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사.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9. 정치운동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10. 집단행위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11.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파 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 책
<p>※ 비고</p> <p>1) 제1호가목의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의 비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징계권자(임용권자)는 비위 정도 및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p> <p>2) 제1호다목에서 "부작위"란 공무원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p> <p>3) 제1호라목에서 "주요 부패행위"란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에서 정한 징계시효가 5년인 비위를 말한다.</p> <p>4) 제1호마목에서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침해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상의 손실이 발생하게 하는 업무행태를 말한다.</p> <p>5) 제1호사목에서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말한다.</p> <p>6) 제1호아목에서 "부정청탁"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을 말한다.</p> <p>7) 제7호가목 및 나목에서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말한다.</p> <p>8) 제7호가목에서 "업무상 위력 등"이란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말한다.</p> <p>9) 제7호나목에서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p> <p>10) 제7호라목에서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를 말한다.</p> <p>11) 제7호바목에서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란 공무원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음 각 목의 사람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p> <p>가. 다른 공무원</p> <p>나.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 및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직원</p> <p>다.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소속 직원을 말한다)</p>				

[별표 2]

###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제2조 관련)



구 분	징 계 사유	징 계 기 준					비 고	
		파 면	해임 이상	강등 이상	정직 이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1. 복무 및 품위	1. 복무위반 가. 무단결근(월 3일 이상) 나. 지참, 무단이석 및 무단조퇴(월 3회 이상) 다. 출장 중 사적용무 등 근무태도 불량 라. 당숙직 근무 위반 (1) 당숙직 근무 불이행 및 근무지 무단이탈(이석) (2) 당숙직 중 음주(만취) 및 유기행위 (3) 기타 당숙직 등 근무소홀					○	○ ○	
	2. 품위손상 가. 강도, 절도, 사기 등 반윤리 사범 (1) 강도 (2) 절도, 사기, 공갈, 협박, 무고 등 나. 도박 및 불법 사행성 오락행위 (1) 상습적인 경우 (2) 일시적인 경우 다. 민원 불친절로 물의 야기 라. 음주, 추태 등 (1) 공무 중 음주 추태 (2) 음주추태로 인한 품위손상(경범죄 등)	○				○	○ ○	
	마. 음주운전 혈중알코올 농도 0.08% 미만인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 0.2% 이상인 경우 음주측정에 불응의 경우					○	○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 44조제 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 44조제 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란 전원 등 운전업무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구 분	징 계 사유	징 계 기 준						비 고
		파 면	해 임 이상	강 등 이상	정 직 이상	감 봉 이상	견 책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li> <li>-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li> <li>-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li> <li>-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li> </ul>			○				3.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른 징계기준을 적용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주운전으로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li> <li>-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li> </ul>	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주운전으로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li> <li>-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li> </ul>	사망사고의 경우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바. 교통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면허운전 교통사고</li> <li>- 교통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사항 미이행 도주</li> </ul> 사. 폭력, 가혹행위 아.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자. 기타 품위손상						○ ○ ○ ○	
	3. 직무유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직무유기·태만</li> <li>나.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 규정」 상의 고발대상 범죄 고발지연 또는 묵인</li> <li>다. 민원서류 및 유기한 문서처리지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처리건수별(월 5건 이상 지연)</li> <li>(2) 지연처리 일자별(5일 이상 지연 3건 이상)</li> </ul> </li> <li>라. 민원서류의 부당한 접수거부, 반려 및 보완서류 요구</li> </ul>						○ ○ ○ ○	

구 분	징 계 사유	징 계 기 준					비 고		
		파 면	해 임 이상	강 등 이상	정 직 이상	감 봉 이상		견 책 이상	
	4.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가. 직무수행 기본자세의 중대한 위반행위 나.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지시 및 부정청탁 등 공정성에 영향을 주는 행위 다. 이권개입 및 직위의 사적이용 금지의무 위반 라. 직무관련 정보를 악용한 거래 금지의무 위반행위 마.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차용, 부동산 임차금지 의무 위반행위 바. 공용물의 사적사용 및 수익 금지의무 위반행위 사. 외부강의등의 신고 및 초과 사례금 수수 신고 의무 위반 행위 아.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위반 행위 자. 신고자의 신분보호의무 위반행위 차. 기타 중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 ○ ○ ○ ○ ○ ○ ○ ○		
	5. 감사거부 및 방해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방해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는 경우						○ ○		
	6. 정보공개 불이행 가. 거짓정보 공개, 정보은닉 나. 불복절차관련 공개의무 불이행 다. 기타 위반사항						○ ○ ○	'불복절차 관련 공개의무 불이행' 이란 불복절차를 통해 공개의무가 발생했음에도 불이행한 경우를 말한다.	
2. 청렴 의무	1. 금품·향응수수 등 가. 100만원 미만 (1) 수동적이고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 (2) 수동적이지만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3) 능동적인 경우 나. 100만원 이상 (1)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2)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					○ ○ ○ ○ ○ ○		

구 분	징 계 사유	징 계 기 준					비 고	
		파 면	해임 이상	강등 이상	정직 이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3. 문서 관인 관리	1. 일반문서에 관한 위법·부당 행위 가. 공문서 위조, 변조 (1) 고의 (2) 중과실 (3) 경과실 나. 공문서 파기 (1) 고의 (2) 중과실 (3) 경과실 다. 공문서 망실 (1) 고의 (2) 중과실 (3) 경과실 라. 허위문서 작성 및 행사(허위복명 등) 마. 공문서(전자문서) 및 중요문서의 불법유출 (1) 고의 (2) 중과실 (3) 경과실	○			○		○	
	2. 비밀문서 및 대외비 문서관리 가. 비밀문서 분실 나. 대외비 문서 분실 다. 관리 소홀	○			○		○	
	3. 관인의 부정사용 및 분실				○			
4. 예산회계 및 물품 관리	1. 예산, 회계사무의 부적정 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나. 예정가격 누설 다. 예정가격조서의 위법·부당 작성 라. 위법·부당 입찰 및 낙찰				○	○	○	

구 분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비 고	
		파 면	해임 이상	강등 이상	정직 이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마. 물품 및 공사의 부당 분할발주계약 등 위법·부당 계약 바. 위법·부당한 검수 및 검사 사. 위약금의 미징수 기타 손실 초래 아. 허위 지출증빙서 작성 자. 공과금의 부당 관리 차. 기타 회계상의 부정 카. 대형공사 입찰담합방지 점검표 작성 소홀 타. 대형공사 입찰담합방지 점검표 미작성					○ ○ ○ ○	○ ○ ○	
	2. 물품 및 시설물 관리 부적정 가. 물품, 재산의 망실 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물품 및 시설물 훼손 다. 물품관리 소홀 라. 공공용물의 개인사용 마. 영조물 관리 태만					○ ○	○ ○ ○	
5. 공사	1. 공사의 계획 및 설계 가. 공사 집행시기 부적정 나. 공사목적 및 규모 부당설계 다. 공사수량 및 단가 과다설계						○ ○ ○	
	2. 공사시공 감독 가. 공사용 관급자재 부당관리 나. 공사용 자재 규격 및 품질 부적품 사용 다. 주요 구조부 또는 구조물에 중대한 손괴 발생(건설) 라. 공사시공을 조잡하게 하였을 때 마. 공사수량 부족 시공 바. 공사설계 부당 변경 사. 공사내용 임의변경 시행					○ ○	○ ○	
	3. 공사준공(기성) 가. 준공검사(기성) 불법·부당 나. 공사기간 부당연기 다. 공사기성고 부당산출				○	○ ○		

구 분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비 고
		파 면	해 임 이상	강 등 이상	정 직 이상	감 봉 이상	
	4. 기타 공사관리 가. 공사 하자발생 미조치 나. 부당 하도급 목인(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 참조) 다. 공사 하자점검 불이행 라. 도로 무단굴착 목인 등 마.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제도 위반업체에 대한 처리 소홀 바. 기타 공사 집행상의 부정행위					○ ○ ○ ○ ○	
6. 안전관리 및 유지 관리	1. 공사장 안전관리 가. 공사장 안전관리업무 소홀로 중대 재해 발생 나. 고의·중과실 등 안전관리 업무 소홀 다. 공사장 안전점검 허위보고					○ ○ ○	
	2. 도시시설물 유지관리 가. 시설물의 주요부재등 손상 방치로 안전사고 발생 나. 시설물 손상의 1개월 이상 방치등 유지 관리소홀 다. 시설물 유지관리 소홀로 동일 시설물 파손이 동일 장소에서 3번 이상 발생하여 재보수 라. 시설물 보수 허위처리 마. 시설물 안전점검 허위보고					○ ○ ○ ○	
7. 소송 업무	1. 패소원인 행위자 가. 고의 중과실의 행정처분 나. 경과실 행정처분 다. 허위사실 증언 라. 증인출석 불응					○ ○ ○ ○	
	2. 소송수행 태만으로 패소결과 초래자 가. 불변기일(상소, 응소기일 등) 도과하거나 변론기일 불참 나. 입증자료 제출 태만					○ ○	
	3. 자료제출 및 법정보고 지연(3회 이상)					○	